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정관

(제정) 2019.10.01. 설립발기인 총회

(개정) 2023.01.20.

(개정) 2023.06.08.

(개정) 2024.01.03.

(개정) 2024.06.27.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 및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고 청소년·청년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·청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)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(이하 "재단" 이라 한다)이라 한다.
- 제3조(설립근거) 재단은 「민법」과 「논산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.
- 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 재단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424 (지산동)에 둔다.
- 제5조(사업의 종류)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청소년 체험·수런프로그램 등 청소년활동 운영 및 진흥사업
- 2.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축제·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
- 3. 청소년을 위한 복지·보호·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4. 청소년 진로체험 및 학교연계사업
- 5.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포상
- 6.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
- 7.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
- 8.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년지원을 위하여 논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6조(수혜평등의 원칙)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.

제2장 재산 및 회계

- **제7조(재산의 구분)**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다.
 -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과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서 논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과 평가액은 "별지 1"과 같다.
 -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제8조(재산의 관리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, 임대, 용도변

- 경, 담보 제공, 의무부담, 권리포기, 장기차입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
-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9조(운영재원)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하다.
 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출연금 및 보조금
 - 2. 재단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
 - 3.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발생한 수익금
 - 4. 재단에 대한 지정기부금 <신설 2024.01.03.>
- 제10조(회계연도)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11조(업무보고)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.
 - ② 재단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- 제12조(세계잉여금)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- 제13조(임원의 보수) 재단의 임원(대표이사 제외)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.
- 제14조(감사의 실시)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장 임 원

- 제1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두며,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 - 1. 이사장 1인
 - 2. 대표이사 1인
 - 3. 근로자이사 1인
 - 4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(이사장, 대표이사, 근로자이사 포함)
 - 5. 감사 2인
- 제16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·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또한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성과평가를 거쳐 1회에

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, 후임자가 승계한다.
- ③ 선임직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④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-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에 승인후 3주 이내에 관합법원에 등기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임원의 선임) 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

- ②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
- ④ 당연직 이사는 시 청소년업무 국·과장, 정책보좌관이 된다.
- ⑤ 선임직 이사는 지역사회 및 청소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.
- ⑥ 근로자이사는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처 시장이 임명한다.
- ⑦ 감사는 당연직 감사 1인과 선임직 회계전문가 1인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감사는 시 감사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선임직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시장이 임명한다.
- ⑧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
- 제18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
 - 2. 「청소년기본법」제28조의2에 따른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사람
 - ② 이사 상호간에 「민법」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「민법」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.
 - ④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
- 제19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-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의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-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 - 1.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
 -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

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

-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5. 이사가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직무집행을 정지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
- 6.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
- 제20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 - 1.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- 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- 3.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- 4.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
 - 5. 「민법」 및 「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
 - 6.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제21조(임원의 면직) 임원이 그 직위나 직무를 사퇴하고자 할 경우 사직원을 이사장에게 제출하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22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

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장 이사회

제23조(이사회의 구성) ①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.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4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재단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
- 4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5.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- 6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- 7.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의 법령이나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제25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-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.
- 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- 2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할 때
- 3.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④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- ⑤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제26조(이사회의결 제척사유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단 의 이해가 상반될 때
- 제27조(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)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- 제28조(이사회의 회의록)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야 한다.
 - ② 회의록에는 이사회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참석자가 기명

날인하여야 한다.

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재단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제5장 사무국

- 제29조(사무국) ① 재단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다.
 -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사무국장은 직원의 임용절차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.
 -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, 직원의 임용, 징계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30조(공무원의 파견 등 요청) ①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재단은 제1항에 의한 파견근무자에게 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장 민, 관 협력체계 구축 운영

- 제31조(파트너십) ① 재단은 제1조 목적 및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 - ② 민, 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7장 수익사업

제32조(수익사업)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과 제5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

수 있다.

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8장 보 칙

- 제33조(정관변경)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34조(해산)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제35조(잔여재산의 처리) 재단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.
- 제36조(청산종결의 신고)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- 제37조(운영규정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38조(준용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

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.

제9장 기부금을 통한 사업

제39조(기부금의 사용) 지정기부를 통한 기부금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,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. [본조신설 2024.01.03.]

제40조(기부금 사용 공개) 연간 기부금 및 활용실적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[본조신설 2024.01.03.]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 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① 재단의 설립 당시에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 - ② 최초 재단 설립 시에는 시장이 규정 등을 작성 확정할 수 있으며, 직원채용, 예산편성 등 필요한 행정 행위를 시행 한 경우에는 본 정관에따라 재단 이사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재단의 세부 규정 제정 이전에는 관계법령 및 논산시 각종 조례 및 규칙을 준용하여 사무를 처리한다.
- 제3조(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)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"별지 2"와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부 칙(개정 2023.01.20.)

이 변경정관은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개정 2023.06.08.)

이 변경정관은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개정 2024.01.03.)

이 변경정관은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개정 2024.06.27.)

이 변경정관은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